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. 7. 10 선고 2024가단504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5.

판 결 선 고 2024. 7. 10.

주 문

-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.
-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4. 10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C(D생)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23. 4. 13. 접수 제5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차1093호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. 8. 28. 3,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. 그런데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함)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, 친족 관계에 있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4. 10.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23. 4. 13. 접수 제5949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라 함)를 마쳤다.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제출된 증거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4. 2. 1. C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,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등기의무자,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(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)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하므로(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.

그리고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현준

별지